

서울특별시마포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5-38
----------	-------

제출년월일 : 2025. 4.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제안이유

조직개편에 따른 마포구 규제개혁위원회 구성을 정비하고, 오랜 기간 개정되지 않은 조례를 정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규제개혁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구성 변경(안 제3조 제1항)

나. 위원회 민간위원 과반수 구성 및 위촉기준 명확화(안 제3조 제3항)

다. 위원 임기 명확화(안 제3조 제4항)

라. 위원 수당에 관한 조문 정비(안 제9조)

마. 자치법규에 맞는 용어 정비

바. 띄어쓰기 정비

3. 주요 토의과제

없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적용범위)
- 2) 「서울특별시 마포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합 의: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사항

- 1) 입법예고: 2025. 3. 13.~4. 2. (제출된 의견 없음)
- 2) 새마포담당관의 행정규제심사 검토결과: 원안 동의
- 3)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
- 4) 가족정책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평가 결과: 의견 있음

[성별영향평가결과]

관계 법령	「양성평등기본법」
개선의견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 따라서 일부조례개정안 제3조 제1항에 위원회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도록 명시
새마포담당관 의견	「마포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구청장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제4조는 “이 조례는 구에 설치되는 상설 및 비상설 위원회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마포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u>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을 구성하여야 하므로</u> 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을 불수용하기로 함.

서울특별시마포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마포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를 “서울특별시 마포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지역경쟁력”을 “지역 경쟁력”으로,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규제개혁위원회”를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규제개혁위원회”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마포구규제개혁위원회”를 “서울특별시 마포구 규제개혁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기존규제의 심사·규제정비 종합계획”을 “기존 규제의 심사, 규제정비 종합계획”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의견수렴”을 “의견 수렴”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규제개혁실태”를 “규제개혁 실태”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2인을 포함한 15인”을 “1명을 포함한 15명”으로, “구성한다”를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중전의 제1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중전의 제2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중전의 제3호) 중 “4급이상”을 “4급 이상”으로,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호 및 제6호(중전의 제4호) 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고 한다)의 각 국·소장, 담당관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는 사람

2.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2명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제2호의 경우 위촉직 위원의 임기 내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에 한한다.

제4조제1항 중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고”를 “위원회를 대표하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장 2명 모두 사고가 있을”을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로 한다.

제5조제3항 본문 중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7일전”을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7일 전”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안전심의”를 “안전 심의”로, “관계공무원”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심의안전”을 “심의 안전”으로, “단체대표”를 “단체 대표”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간사 1인”을 “간사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과장”을 “장”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규제신고센터의 설치)”를 “(규제신고센터의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주민의견”을 “주민 의견”으로, “소속하에 규제신고센터”를 “소속 하에 규제신고센터”로 한다.

제9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제9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구 소속 공무원이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석한 경우
2.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이 구의원의 자격으로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서울특별시마포구규제개혁위원회</u> <u>설치및운영조례</u>	<u>서울특별시 마포구</u> <u>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u> <u>조례</u>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u>지역경쟁력</u>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u>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의 규정</u>에 의하여 <u>서울특별시마포구규제개혁위원회</u>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행정규제개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u>서울특별시마포구규제개혁위원회</u>(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설치한다. ②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u>기존규제의 심사·규제정비종합계획</u>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3. (생략)	제1조(목적) ----- ----- <u>지역 경쟁력</u>----- ----- ----- 「<u>행정규제기본법</u>」 제3조제3항에 따라 <u>서울특별시 마포구 규제개혁위원회</u>----- ----- -----.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 ----- ----- <u>서울특별시 마포구 규제개혁위원회</u>----- ----- -----. ② ----- -----. 1. <u>기존 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u> ----- ----- 2. 3. (현행과 같음)

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 ·
평가에 관한 사항
6. 기타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 · 조
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
항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2
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
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구청장과 위원중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③위원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이
하 “구”라고 한다) 4급이상 공
무원 및 구의회 의장이 추천하
는 의원 2인과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구정의 각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
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
는 자가 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
가 되어야 한다.

<신 설>

4. ----- 의견 수렴

5. 규제개혁 실태-----

6. 그 밖에 -----

--

제3조(구성) ① ----- 1명
을 포함한 15명 -----
---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구청
장으로 한다.

<삭 제>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
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
호부터 제6호까지의 위원이 전
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
여야 한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
라고 한다)의 각 국 · 소장, 담
당관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

<신 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전임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2.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

3. 4급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자

4. 기타 규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 2명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 · ② (생략)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는 사람

2.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2명

3. -----

사람

4. -----
----- 사람

5. 4급 이상 -----
-- 사람

6. -----
--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제2호의 경우 위촉직 위원의 임기 내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에 한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
위원회를 대표하며-----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

제5조(회의)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
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④ (생 략)

제6조(의견청취 등) ①위원회는
안전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에는 구 산하 관계공무원을 회
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심의안전과 관련이
있는 단체대표, 이해관계인 또
는 관계전문가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7조(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규제개혁 주무부서의
과장이 된다.

제8조(규제신고센터의 설치) 위원
회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
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하에 규제신고센터를 둔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는 위원장
및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여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7일
전-----
-----, -----
----- 그렇지 않다.

④ (현행과 같음)

제6조(의견청취 등) ① -----
안전 심의-----
----- 관계 공무원-----

-----.

② ----- 심의 안전-----
--- 단체 대표-----

-----.

제7조(간사) ① -----
----- 간사
를 -----.

② -----
장-----.

제8조(규제신고센터의 설치) ---
----- 주민 의
견-----
소속 하에 규제신고센터-----.

제9조(수당 등) -----

발언하는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신 설>

----- .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다.

1. 구 소속 공무원이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석한 경우
2.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이 구의원의 자격으로 위원회
에 참석한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마포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비용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

3. 미첨부 사유

-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새마포담당관 문민경
연 락 처	02-3153-8525